

「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/영업 활동 지원」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「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/영업 활동」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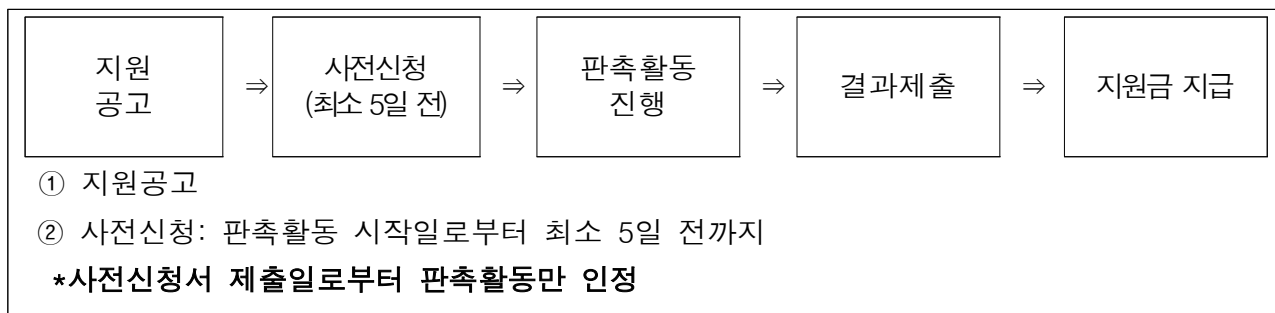
2026년 2월 20일
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

□ 사업개요

- 기 간: 2026. 3. 1.(일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대 상: 제주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
- 내 용: 국내 현지 방문 판촉/영업 활동 지원

□ 국내 현지 판촉활동 지원

- 활동기간: 2026. 3. 1.(일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대 상: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
- 지원내용: 항공료(또는 승선료), 숙박비
- 지원방식: 업체당 1,000천원 지원(1회 최대 500천원)
- 지원조건
 -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,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
 - 항공운임,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, 제16조, 제30조에 의거,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르며 **항공지원은 일반석에 한함**
 - 출장 시,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
- 지원절차



- 구비서류
 - 현지 판촉활동 지원 사전신청서 1부 <서식참조>
 - 현지 판촉활동 일정 1부 <서식참조>
 - 서약서 1부 <서식참조>
 - 사업자등록증 1부
 - 공제영업보증서 1부 ***여행업에 한함**

③ 현지 판촉활동 진행

④ 결과제출

- 공통서류
 - 현지 판촉활동 지원 결과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부 <서식참조>
 - 명함 및 사진자료 1부 <서식참조>
 - 법인통장사본 1부
- 추가제출
 - 제주출발 국내선 왕복 항공료(또는 승선료): 영수증 1부, 탑승권 1부
 - 숙박비: 영수증 1부, 숙박확인서 1부

※그 외,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

⑤ 지원금 지급: 매월 마지막 주

- 지급기준: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

구분	선박운임	항공운임	숙박비 (1박당)
제2호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- 100천원, 광역시 - 80천원, 그 외 지역 - 70천원)

예시) 결과제출(4. 1. ~ 4. 14.) ⇒ 지원금 지급(4. 30.) *해당월 마지막 주 지급
 결과제출(4. 15. ~ 4. 30.) ⇒ 지원금 지급(5. 30.) *익월 마지막 주 지급

□ 행정사항

- 중앙정부,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
-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
- 이외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

□ 문의 및 신청

- 문의: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대리 신민희(T.064-741-8773)
- 신청: 담당자 이메일 접수(mini@jta.or.kr) ***지원가능여부 확인 필수**

붙임 「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/영업 활동 지원」 사전신청서 및 결과 신청서 각 1부. 끝.